

**1. 2023 하반기 보육사업안내**

\* 쪽\_2023 보육사업안내(한글파일 기준) 해당 쪽수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<b>Ⅱ. 어린이집의 운영</b>					
90	3.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라.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	○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. 다만 입소료,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- 보육료 내역: 인건비, 교재·교구비, 급·간식 재료비, 관리운영비(난방비,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, 사무용품비 등)	○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. 다만 입소료,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- 보육료 내역: 인건비, 교재·교구비, 급·간식 재료비, 관리운영비(난방비,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, 사무용품비 등) <u>* 급·간식 재료비의 경우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(지청)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</u>	▪ 급간식 재료비 별도 재원 활용 근거 명확화	
<b>Ⅶ. 만3~5세반 누리과정</b>					
291	2.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다.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(운영지원비)	○ 사용범위 -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(우선 활용),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•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는 누리과정 수업,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·관리 필요 * 차입금 상환,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  (중략)	○ 사용범위 -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(우선 활용),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•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는 누리과정 수업,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·관리 필요 * 차입금 상환,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 <u>• 단, 어린이집 별 누리과정 2개반(장애아동의 경우 8개반) 이하인 경우 '보조교사 인건비 우선 활용' 미적용</u>  (중략)	▪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사용 범위 완화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p>▮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▮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누리과정(일반 아동)</th> <th>누리과정(장애 아동)</th> <th>보조교사 인건비 (최소 채용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개반 이하</td> <td>8개반 이하</td> <td>우선 활용 권장</td> </tr> <tr> <td>3-4개 반</td> <td>9-14개 반</td> <td>우선 활용 (최소 1명 이상)</td> </tr> <tr> <td>5-7개 반</td> <td>15-20개 반</td> <td>우선 활용 (최소 2명 이상)</td> </tr> <tr> <td>8-10개 반</td> <td>21개반 이상</td> <td>우선 활용 (최소 3명 이상)</td> </tr> <tr> <td>11개반 이상</td> <td>-</td> <td>우선 활용 (최소 4명 이상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누리과정(일반 아동)	누리과정(장애 아동)	보조교사 인건비 (최소 채용기준)	2개반 이하	8개반 이하	우선 활용 권장	3-4개 반	9-14개 반	우선 활용 (최소 1명 이상)	5-7개 반	15-20개 반	우선 활용 (최소 2명 이상)	8-10개 반	21개반 이상	우선 활용 (최소 3명 이상)	11개반 이상	-	우선 활용 (최소 4명 이상)	<p>▮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▮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누리과정(일반 아동)</th> <th>누리과정(장애 아동)</th> <th>보조교사 인건비 (최소 채용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del>2개반 이하</del></td> <td><del>8개반 이하</del></td> <td><del>우선 활용 권장</del></td> </tr> <tr> <td>3-4개 반</td> <td>9-14개 반</td> <td>우선 활용 (최소 1명 이상)</td> </tr> <tr> <td>5-7개 반</td> <td>15-20개 반</td> <td>우선 활용 (최소 2명 이상)</td> </tr> <tr> <td>8-10개 반</td> <td>21개반 이상</td> <td>우선 활용 (최소 3명 이상)</td> </tr> <tr> <td>11개반 이상</td> <td>-</td> <td>우선 활용 (최소 4명 이상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누리과정(일반 아동)	누리과정(장애 아동)	보조교사 인건비 (최소 채용기준)	<del>2개반 이하</del>	<del>8개반 이하</del>	<del>우선 활용 권장</del>	3-4개 반	9-14개 반	우선 활용 (최소 1명 이상)	5-7개 반	15-20개 반	우선 활용 (최소 2명 이상)	8-10개 반	21개반 이상	우선 활용 (최소 3명 이상)	11개반 이상	-	우선 활용 (최소 4명 이상)		
누리과정(일반 아동)	누리과정(장애 아동)	보조교사 인건비 (최소 채용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개반 이하	8개반 이하	우선 활용 권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-4개 반	9-14개 반	우선 활용 (최소 1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-7개 반	15-20개 반	우선 활용 (최소 2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-10개 반	21개반 이상	우선 활용 (최소 3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개반 이상	-	우선 활용 (최소 4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누리과정(일반 아동)	누리과정(장애 아동)	보조교사 인건비 (최소 채용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del>2개반 이하</del>	<del>8개반 이하</del>	<del>우선 활용 권장</de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-4개 반	9-14개 반	우선 활용 (최소 1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-7개 반	15-20개 반	우선 활용 (최소 2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-10개 반	21개반 이상	우선 활용 (최소 3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개반 이상	-	우선 활용 (최소 4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2. 2023 하반기 보육사업안내(부록)

\* 쪽\_2023 보육사업안내 부록(한글파일 기준) 해당 쪽수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<b>I. 어린이집의 설치</b>					
58	부록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 다 급간식 재료비(35쪽)	<p>2) 일반사항</p> <p>○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</p> <p>-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. 이는 최소 1,900원 이상으로 시·군·구에서 시설별·지역별·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</p> <p>- 다만, 누리과정의 경우 2,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</p>	<p>2) 일반사항</p> <p>○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</p> <p>-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. 이는 최소 1,900원 이상으로 시·군·구에서 시설별·지역별·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</p> <p>- 다만, 누리과정의 경우 2,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</p> <p><u>* 급·간식 재료비의 경우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(지청)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</u></p>	<p>▪ 급간식 재료비 별도 재원 활용 근거 명확화</p>	